2022년도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인(선수·지도자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) 등록 안내

1. 엘리트(전문체육) 선수등록

- * 2월 28일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등록가능, 3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으로 등록(추후 안내 예정)
- 가. 1차 선수등록
 - ① 2022년 4월 10일(일) 24:00까지

(단, 신인선수, 신설팀, 지도자 및 심판은 수시 등록 가능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1장제7조제1항】)
 ②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

- ③ 시 · 도지부에 서면등록부 제출
- ※ 2014년부터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별도의 서면등록부를 받지 않음
 - (단, 소속팀 변경 시, 시·도를 변경할 경우 선수등록신청서 작성 시, 이적동의서 첨부파일에 필 히 업로드)
 - * 이적동의서 양식 다운로드: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소속변경(이적)신청 내 이적동의서 양식
- * 시·도지부 서면등록부 제출 시 기존등록선수는 선수등록부 1부만 제출해도 무관하며, 신규선수 는 개인카드 1부 추가 제출
- *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에 준해 등록하여야 하며,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에 누락된 선수는 <u>미등록</u>으로 간주함
- 나. 2차(추가) 선수등록
 - ① 2022년 7월 10일(일) 00:00부터 30일(토) 24:00까지

(단, 신인선수, 신설팀, 지도자 및 심판은 수시 등록 가능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1장제7조제1항】)
②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1차 선수등록과 방법 동일

* 참고사항 - 선수등록마감 일자는 '등록 신청일' 기준임 (최종 승인일 기준 X)

2. 동호인(생활체육) 선수등록

- * 현 동호인등록시스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였음
- * <u>3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으로 등록가능(추후 안내예정)</u>

***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, 동호인 선수 모두 선수등록 시스템 상 <u>최종 승인까지 **'완료'**</u>가 되어야 함

3. 등록 및 승인 절차

가. 엘리트(전문체육) 선수

- (1) 소속팀 및 선수 등록절차
-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메인 상단 "전문체육 선수등록&증명서" <u>빨간</u> 버튼 클릭
- ② '전문선수등록 및 확인/수정' 클릭 ⇒ "보디빌딩" 종목 선택 클릭
- ③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 인증(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)
- ※ 휴대폰은 본인명의 휴대폰이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시 아이핀을 발급 받아야 함(본인명의 휴 대폰이 없어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
- ④ 메인화면 상단 "선수등록" ⇒ "**선수등록 신청서 작성**" 메뉴 클릭

[STEP 1] 기본정보 확인

- 기본 선수정보 입력: 종목선택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록정보 확인
- ②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 확인(수료 필수)
 - -온라인 인권교육받기 클릭 새창⇒정보동의⇒종목선택 "보디빌딩"⇒입장하기 클릭
 -선수 과정 지도자 과정 중 본인에게 맞는 과정 선택(예: 대학부선수는 대학.일반
 선수 과정 클릭)⇒학습하기 클릭⇒완료 후 새로고침하여 이수시간 확인
- ③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확인(수료 필수)
- -본인 해당 배너를 클릭⇒한 개의 챕터가 끝나면 화면 오른쪽 하단의 '다음' 버튼
 클릭⇒다섯 개의 챕터 모두 완료되어야 함⇒새로고침하여 이수시간 확인
- ④ 최종등록정보에서 본인이력찾기 클릭 후 본인이력 확인(한번이라도 선수등록 정 보가 있는 경우)

-신규는 신규 등록을 클릭 후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⇒체육인번호 생성 [STEP 2] 소속팀 선택

소속팀 선택: 시·도, 종별, 성별, 전체 선택한 후 팀 조회(소속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종별 및 성별, 전체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, 팀 명 중요 단어만 조회. 그 후에 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속팀 등록 여부를 시·도지부에 문의 요망)

[STEP 3] 선수 상세정보 입력

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단계 이동(사진, 주소, 이메일, 휴대폰, 세부종목 필수사항) * 승인진행사항을 안내받고 싶은 선수는 체크필수

[STEP 4] 학력정보 입력(선택사항)

[STEP 5]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신청서 출력

1단계 본인정보 확인 후 "저장 및 등록신청서" 클릭

2단계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"서약동의" 클릭

3단계 신청서 출력(등록신청서 및 선수등록카드)

* 선수등록페이지 좌측 중간 '선수등록 방법 안내' 클릭 시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

⑤ 등록신청서, 개인별 카드 출력(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팀장 직인 날인 후) 시·도지부 제출

- (2) 시 · 도지부 (1차 승인)
-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하단에 "체육정보시스템" ⇒ 휴대폰 혹은 아이핀 로그인
 (로그인: 기존아이디가 휴면 처리가 되어있을 시 우리 사무처로 연락하여 해제 후 이용 가능)
- ② 선수·지도자·심판관리 내 등록관리 → 선수관리 → 웹신청선수조회 클릭하여 승인상태에 등록 신청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
- ③ 해당 선수 선택 후 승인 버튼 클릭

나. 동호인(생활체육) 선수 - <u>3월 1일부터 신규시스템으로 등록 가능(추후 안내 예정)</u>

- 다. 지도자 등록(상시등록)
 - (1) 선수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수등록시스템 내 "지도자 등록신청"을 이용하여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지도자 등록을 해야 함
 - (2) 등록 후 시·도 지부에 지도자(임원) 등록신청서 제출 후 <u>선수등록과 동일 방법으로 승인</u> ※ 지도자 및 임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전국체육대회 지도자 신청 불가
 - ※ 우리 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은 지도자 겸임 불가
 - (3) 등록 자견 요건[中1] (2024.1.1.부터 시행)
 - ①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
 - ②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

라. 심판 등록(상시등록)

- (1) 심판 등록 절차
- ①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메인 상단 "선수등록&증명서" <u>빨간</u> 버튼 클릭
- ② 심판 등록신청 ⇒ "보디빌딩" 종목 선택 클릭
- ③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 인증(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)
- ※ 휴대폰은 본인명의 휴대폰이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시 아이핀을 발급 받아야 함(본인명의 휴 대폰이 없어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
- ④ 메인화면 상단 심판등록 메뉴 클릭

[STEP 1] 기본정보 확인 1 기본 심판정보 입력: 종목선택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록정보 확인 2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 확인(수료완료 해야 함) - 온라인 인권교육받기 클릭 새창⇒정보동의⇒종목선택 "보디빌딩"⇒입장하기 클릭 - 선수 과정, 지도자 과정 중 본인이 원하는 과정 中 한 가지 선택 ③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확인(수료완료 해야 함) - 심판 등록 의무교육 배너를 클릭⇒한 개의 챕터가 끝나면 화면 오른쪽 하단의 '다 '음' 버튼 클릭⇒다섯 개의 챕터 모두 완료되어야 함⇒새로고침하여 이수시간 확인 ④ 체육인번호발급 (이전에 선수나 지도자로 한 번도 등록한 이력이 없을 경우만 해 당함)

[STEP 2] 심판 상세정보 입력

- 본인의 개인 정보 입력(사진, 주소, 이메일, 휴대폰, 세부종목 필수사항)
- 소속기관: 본인 소속 시·도지부명 입력[예: 심판강습회 신청 당시, 서울소속 심판
 인 경우, '서울특별시보디빌딩협회' 입력, 중앙소속심판인 경우, '대한보디빌딩협회' 입력]

[STEP 3] 자격사항 입력

1) '자격사항 추가' 선택

2 자격사항 내 입력 사항

- 1) 세부종목: 보디빌딩
- 2) 국내/국제 구분: 국내 / 국제 中 해당에 맞는 구분 선택
- 3) 자격등급: 1급 / 2급 / 기타(국제심판만 해당) 中 택 1
- 4) 발급일자: 심판카드 내 기입되어있는 등록일자로 선택
- 5) 자격증명: 보디빌딩심판자격증
- 6) 발급처: 대한보디빌딩협회

[STEP 4] 추가정보 입력(선택사항)

- 연수 및 교육사항[예: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], 학력정보, 상훈 등 해당사
 항 있을 시, 추가버튼 눌러서 기입

[STEP 5] 신청내용 확인

- 본인정보 확인 후 "신청서 저장" 클릭
-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"서약동의" 클릭 후 등록신청
- 심판 등록은 시·도 승인 단계 없이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검토 후 승인함
- * 심판등록페이지 좌측 중간 '심판등록 방법 안내' 클릭 시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
- * 참고사항(필수)
- 전국대회 및 각종 시·도 대회 심판 참여 전 반드시 시스템 내 심판 등록이 '완료' 되어 있어야
 함. 그렇지 않을 경우, 심판 참여 및 배정 불가능
- 심판자격 유지기간이 만료된 심판들에 대해서는 심판 등록 승인 불가능(심판강습회 자격갱신 이 후 등록 및 승인가능)

마. 선수관리담당자 등록(상시등록)

- (1) 등록 절차는 지도자 등록 절차와 동일
- (2) 등록 자격 요건[中1]
-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, 한의사, 간호사
- 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
- ③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
- ④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

4. 특이사항

- 가. 소속 시·도 등록 변경 시 이적동의서 필히 업로드(대학 진학에 의한 등록변경 등은 제외함)
- * 단, 당해 연도 선수등록 후 등록지 소속팀으로 1회 이상 대회에 출전한 자는 당해 연도에 타 시 ·도로 이적할 수 없다.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18조제2항 (2021.1.25.개정)】
- 선수: 1) 이적동의서 양식 다운로드(대한체육회 선수등록-소속변경(이적)신청 내 이적동의서 양식)
 2) 전 소속 시·도지부 직인을 받은 후 이적동의서 첨부 파일에 업로드
- 해당 시·도지부: 선수등록 1차 승인 시, 업로드 된 이적동의서 확인
- 나. 선수등록 접속 시 메인화면 "FAQ"에 의문사항 대부분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으므로 필독 요망
 * 시스템 장애 문제 해결문의 02-2144-8141(진진시스템)
- 다. 전년도 선수정보가 안 뜨는 경우
 - 원인: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, 등록 누락된 경우임
 - 해결: 생년월일 수정(시 · 도지부에서 수정해줘야 함), 등록 누락된 경우는 그냥 신규로 처리
- 라. 소속팀이 없을 경우 (신규 팀이거나 등록 누락된 경우)
 - 해결: 시·도지부에서 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로 제출하며 우리 협회에서 신청서
 를 받아 시스템에 신규 팀 등록
- 마. 소속팀의 시·도, 종별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
 - 해결: 잘못되어 있는 소속팀에 대한 내용을 팀 등록 신청서에 수정 기입하여 우리 협회로 제출 (우리 협회에서 정정)
- 바. 소속팀 변경 또는 입력 처리방법
 - 해결: ① 소속팀명 옆에 있는 '팀검색' 버튼 클릭
 - ② 상세검색 화면에서 시도, 종별 등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 클릭
 - ③ 찾고자 하는 팀이 나오면 팀 이름 클릭
 - ④ 팀 이름을 클릭하면 팀 정보 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닫히고 변경된 팀명이 들어감
- 사. 소속팀명 옆에 있는 '팀검색'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
 - 원인: 방화벽 세팅으로 인해 문제 발생
 - 해결: 다른 PC에서 사용하면 됨
- 아. 선수등록시스템 기능추가(부정확한 휴대번호, 수신 거부 시 제외)
 선수등록 최초 신청 시, 각 단계별 승인 시 문자서비스 제공
- 자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과 임원(지도자)이 일괄 등록할 경우,

선수 본인이 모르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

- 임원이 일괄 등록 불가능 → 선수 · 임원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등록

차. 선수등록 시 우리 협회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함
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1장제7조제3항】

5. 주의사항

- 가. 선수등록 시 주의사항
 - 19세이하부 선수의 경우 1년 유급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혹은 19세 이하만 고등부 선수 로 등록할 수 있음
 - ②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, 대학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. 대학원은「OO대 학교 대학원」으로 팀명을 정확히 생성하고 일반부선수로 대회 출전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14조제5항】
 - ③ 신규 팀 생성 시나 재등록 시 소속구분을 일반 및 학교로 지정하여 운동부(학교, 직장)·클럽, 체 육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등록하고, 종별은 운동부일 때만 학교 또는 실업(일반) 나머지 클럽 체 육관의 경우 기타(일반) 종별 설정
 - ④ 심판 및 선수 중복등록(활동) 불가능
 - 가)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협회의 엘리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.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17조제2항 및 제3장제27조제2항】
 - 나)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협회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. 【근거: 경기인등록 규정 제4장제33조제2항】
 - ⑤ 도핑방지규정 위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중 선수등록이 불가하며, 자격정지기간이 끝난 대상자 는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의무를 준수한 것을 전제하여 절차에 따라 복귀 후에 선수등록 가능
- 나. 대회출전 시 주의사항
 - 우리협회 홈페이지 '대회참가신청시스템'을 통해 대회참가신청을 할 때, 신규선수의 경우 반드 시 '로그인' - '아이디/비밀번호 찾기' 및 '아이디찾기'를 진행하여 '선수계정자동생성'을 진행하 여야 로그인 및 대회참가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
 - ② 2017년도부터 학생선수는 전국대회(동호인 대회 제외)에 출전 시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 준수 를 위해「학교장 확인서」를 대회참가신청서, 재학증명서와 함께 제출 하는 것을 의무화(수업일 수 1/3 적용)
 - ③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이하부 선수는 본인 소속 학교로 출전하여야 함
 - ④ 대학대회 출전선수 범위: 방송통신대 또는 원격대학(사이버대학)은 대학대회 출전 가능하나 학 점은행제,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대학대회에 출전 불가능
 - ⑤ 당해연도 전문선수(동호인선수)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(동호인선수) 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음
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21조제1항 및 제3장제29조제2항】

다. 기타 주의사항

-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3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협회로부터 선수 등록의 제한을 받음 (단, 동호인 선수제외)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21조제3항】
- ② 우리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3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협회로부터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음 (단, 동호인 선수제외) 【근거: 경기인등 록규정 제2장제21조제4항】
- ③ 세계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, 참가할 경우 세계연맹에 회부되어 세계연맹 정관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음
 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21조제6항 및 제3장제29조제3항】
- ④ 우리 협회 등록선수가 스포츠로써의 보디빌딩 홍보와 관계없는 광고, 쇼, 이벤트행사에 참가할 시는 사전에 우리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향후 미승인 참여 후 적발 시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【근거: 경기인등록규정 제2장제21조제7항 및 제3장제29조제4항】